

원로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의 제반 사업 및 운영과 회장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원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원로위원은 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활동하거나 임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로 구성한다.

제3조(예우) 원로위원의 연회비 및 본 학회의 제반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한다.

제4조(회의 및 의견청취 기능)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,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